

준 비 서 면

사 건 2021재나299

[담당재판부:제38-3민사부]

원 고 임 그 류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최 장 복

청 구 취 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고등법원 때 2019년11월26일 답변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냈습니다.

총12페이지.

시 작

노동조합 답변 “갑 제4호증”을 보면 “조합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무단결근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으로 인한 해임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신분보장 기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하려고 했으나 못하게 하여 통증 및 병원치료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업무 제안하여 상관님들에게 항의하여 (1995~1996년) 회사 업무 개선한 쾌심죄로 고의로 회사사규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휴직 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 징계 사유통보(갑 제12호증)에서의 없는 내용이 제1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있습니다.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 인정했습니다.

☞ 이 사항을 조합 활동 피해자의 인지 아닌지를 법률로서 확인하고 합니다.

‘2021재나39 판결문’에는 “행정청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조합 활동 피해자로서 신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그러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노동법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으로,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2009가합9702 때 조합원의 권리인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 사용 내용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안 했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위 사항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관계인 법이므로 법률로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서 론

1. 처음 책을 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혹시 틀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 당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여 행정법원에 소장(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을 냈습니다. 진행 중 1차 변론 마치고 “신분보장 기금 사용 내용서 조회” 신청서 냈는데 성남 민사법원(2007가합3175)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행정법원 때의 주장 그대로 ‘조합 활동 피해자 관련 취소 결정 철회’이며 신분보장 기금 사용 내용 조회서도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각하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장을 내고 다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왜 상당한 내용과 다르게 민사법원으로 이송했으며, 왜 각하 판결입니까? 하니 판사님이 한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며 검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어떠하면 됩니까? 하니 돈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조합 활동피해자 인지 아닌지를 법률로 확인하면 된다고 하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곳에 알아보니 서울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허락받아 소송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KT 노동조합

에 연락했습니다. KT 노동조합에서 타당한 답변 없으면 소송하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답변 없었습니다. ‘소송합시다.’ 하시더니, ‘항소장 낸 것 취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 ‘왜 그럴니까?’ ‘취하 못 하시면 가만히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비용 없습니다.’ 하니 ‘무료로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맡기시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간섭하면 못 해줍니다.’ 했습니다. 그때는 궁핍했었고 또 몸이 정상이 아니라 법률 상담하러 오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울 때라 간섭하면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 어찌나 하는 마음에 ‘네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1심 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는 사건번호 알고, 그 이후에 증언해 줄 사람 있냐고 물기에 알려주었습니다. 메일로 보내 준 소장을 보고 ‘조합 활동 피해자 관련 취소 결정 철회’와 비슷한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각판결 알고는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항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쯤에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와 항소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정해도 못 해준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합니다. 내용 보내 주세요.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내용 검토해 보니 이해가 안 되어 전화 연락을 해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 원이라는 게 이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왜 이송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합니다.’ 하니 ‘안 됩니다.’ 했습니다. ‘성남법원에서 왜 주장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까지는 상담 및 전화 통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률 상당한 변호사님은 남자분이고 전화 걸려와 항소 못 한다고 하신 분은 여자분 마지막 통화하신 분도 여자분 ‘2009가합9702’ 사건 내용 검토하시면 변호사님 이름 있습니다.

☞ 판결문에 “1심에서 임금피해액 이천만 원 및 그 자연 손해금을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기각이유가 되어있어 설명합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궁핍한 상태에서 변호사님께 맡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주시오.

2. 그 당시 8대 노조위원장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위원장은 노조 간부면 업무상 국장을 팰(폭행)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된 갑17호증은 노조 간부님들이 회사 사장 면담 요청하여 거절당해, 사장실 지붕 뚫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 제14호증을 보면 노조 간부가 조합비로 룸살롱에서 양주를 먹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 실명 위기까지 몰고 가는 폭행을 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폭행해도. 노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제 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실 지붕 뚫고들 어가 해고되어도 해고기건 월급 및 복지혜택을 주고,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폭력 합의도 신분보장 규정 근거로 조합비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분보장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1~5대 노조위원장 당선될 때까지는 회사에서 노조 선거 개입 없었고 불법 파업 집회 폭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힘센 노동조합의 불법은 모른 척하고, 약한 조합원 한 사람의 정당한 주장은 무시한 사건입니까?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2. 있었던 일

1. 2001년 6월 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뼈 골절 및 안면 타박상으로 최종은 부산 동아대 학병 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4일 제 의사와 다르게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여, 처음에 담당과장님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

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누워있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고 사정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은 죽변분기국사에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죽변분기국사는 실내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곳이라 몸이 불편 해 할 수 없다고 예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통증이 있는데(머리 목 어깨 부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최종 “의사 장애진단서(갑 제11-1호증)”에는 머리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했고, 머리 부분이라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갑 제8-1호증)” “재심사결정서(갑 제8-2호증)”를 했습니다.

죽변 분기국사에 일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병가 및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이용하고 과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진행 중이라고 상담하니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갑 제9호증. 제25 조(휴직참고))”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분에게 연락도 해보고 하시더니,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휴직 사규를 보여주지 않았고, 회사사규를 치워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꾀병이라고 하시어 “그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 의사진단서(갑 제11-2호증)”도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피로웠습니다. 출근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로 출근했습니다. 시설운영과는 사무실인데 제 책상도 없고 해서 케이블운영실은 현장에서 전주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퇴근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으로 목 안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과장님의 꾀병이라고 했고 병원 치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로” 책을 낸 것은 회사를 망신시켰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사유서를 요구해 사유서도 여러 번 적었습니다.

☞ “징계 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규(갑 제9호증, 제25조(휴직 참고))를 보면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을 활용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징계 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 2010이나 173583 때 다시 제출한 것” 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했고~”

“ ~ “폭로(‘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내용과 같은데 처음 2002년 4월에 낸 책) 책을 출간한 것은 다분히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

☞ 징계 사유통보(갑 제12호증)에서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에 포함됐습니다.

(‘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갑 제14호증’ 다른 분들의(인터넷 게시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2009가합9702 때 피고는 2010. 1. 2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무런 계산 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구 취지 금액의 명확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합니다.

☞ 조합 활동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3. 법원에서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 사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송신청 철회를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 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성남 민사법원으로 이송될 때 민사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각하 판결받아 이해 안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 진실을 밝히려면 행정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하여 기각당했으나 판결로서 이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6재나35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 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3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1다17434 때 주장한 내용. 아래처럼 주장했습니다.

□. 그동안 여러 번의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여 판결했습니다. 높은 양심과 도덕심으로 이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들 보면, 저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지금도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천만 원 지급 판결받아 위의 주장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16재나905 때에는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아래처럼 재심청구원인 변경을 했고, 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 달라고 민원을 하니 법원행정처 답변은 계속적으로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판사님 권한으로 대법원장님께 권의를 하셔서 민사소송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4. 소송 진행 중 협박당한 내용

○. 이사건 2013재나20007 9월4일 변론 때 큰 체격의 노조간부님이 오셨습니다.

변론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가까이 다가와서)

"왜 자꾸 소송합니까?"

"조합활동 피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인정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등의 폭언을 하여 억압당했습니다.

5. 진행했던 내용

○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 활동 피해자가 아니다.'(갑 제4호증 신분보장 기금청구서 반려)라고 해서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290 "조합 활동 피해자 관련 취소 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긴급 사용 내용"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 민사법원(2007가합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에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17434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 기각, 대법원 2012다15435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495 기각, 대법원 2012다108351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07 각하, 대법원 2013다80924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30 기각, 대법원 2014다67478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072 각하, 대법원 2015다68584 상고이유서 불제출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35 각하. 대법원 2016다41272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905 기각. 대법원 2017다23233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698 기각. 대법원 2017다53531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183 기각. 대법원 2018다41429 심리 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50 기각. 대법원 2020다25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32 각하. 대법원 2020다41750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1재나39 각하. 대법원 2021다22046 각하,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재나229 이 사건입니다.

○.고등법원 2010나73583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6. 맷 음

갑 17호증은 1995년 5대 때 불법 집회한 노조 간부님들 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95년 5대 때만). 6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집회로 노조 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고, 7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 집회로 노조 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5, 6 대는 불법 집회로, 7대는 명동성당 불법 파업 집회로) 어떤 분들은 해고됐다가 복직되고도 또 불법 파업 집회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및 복직될 때까지 근무자와 같은 월급에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넘게 혜택 보고 복직한 분들도 여러 명 됩니다.

제가 8대 노동조합이 생긴 2003년에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사건으로 부당해고 되어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니 노조 간부들은 파업 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계시판에도 항의했는데 답변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2018재나183 준비서면에 첨부)

신분보장 제도의 실지는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집회를 하려는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의 규정은 조합원의 신분보장 복지증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참고 : 제출된 증거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 .갑 제1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갑 제2호증 규약
- .갑 제3호증 신분보장 규정
- .갑 제4호증 신분보장 기금청구서 반려
-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 .갑 제6호증 1997.9. 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 .휴직 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 7장
- .'법원의 거짓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 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 .징계 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 .징계 사유통보서 없는 해고 이유(인터넷 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 10장
- .다른 분들의 (인터넷 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 52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 .협박 확인서 : 갑 제16호증
- .신분보장 규정 혜택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 1장
- ※.갑 제1호증은 착오로 잘못 제출됐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관련 피고가 낸 것)
다시 제출합니다. : 갑 제1호증 (2010나73583 때 제출)

2022.3.

재심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